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

제 정 2019. 8. 16 개 정(1) 2020. 9. 29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취업규칙」제50조에 따라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공사의 임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자(이하 "직원")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)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 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조(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) 공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- 2. 지속·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- 3.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- 4. 외모, 학력, 지역, 성별, 직급, 직무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 - 5.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 - 6.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 - 7.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- 8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
 - 9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

- 10.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제5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) 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(이하 "상담원" 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상담원은 인사담당직원, 근로자위원이 추천하는 직원 등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,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, 양성평등 상담원이 겸직할 수 있다.
 - ③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⑤공사는 상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 등의 전문 교육 수강 내지는 이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 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"예방교육"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.
 - ③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
 - 2.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
 - 3.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
 - 4.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
 - 5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
 - 6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
 - 7.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
 - ④ 공사는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**제7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)**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 - 1. 사건의 접수
 - 2.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
 - 3.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조사의 실시
 - 4. 정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

- 5.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,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
- 제8조(사건의 접수)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서면, 전화,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사담당부서 또는 상담원에 신고할 수 있다.
 - ②인사담당부서 또는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.
- 제9조(상담) ①제8조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.
 - ②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하고 피해자를 상담한다.
 - ③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,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하다.
 - ④상담원은 상담을 종료하면 그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 제5조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의 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⑥공사는 제1항의 상담 업무를 위해 상담원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당사자 간 해결) ①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, 상담원은 그 내용을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.
 - ②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한다.
 - ③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담원은 모든 관련 서류를 비공개처리 한 후 인사담당부서에 이를 보고하고, 사건을 종 결하다.
 - ④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사유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 나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.

- 제11조(정식조사) ①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상담원은 제출받은 조사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.
 - ③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④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⑤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.
 - ⑥조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 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⑦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,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⑧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온라인,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12조(조사위원회) 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 - ②조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과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. 필요시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 -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 이 경우 감사는 공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제13조(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)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정식조사가 진행되는 기 간 동안이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, 인사발령,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.
- 제14조(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 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

-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위원장은 인사담당부문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인사담당부서장, 근로자위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.
- ③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이 반드시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.
- 제15조(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 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신고인이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 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.
 - 1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
 - 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 - 3.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
 - 4.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 - ⑤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제2항에 따라 기피하거나 회피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.
 - ⑦피해자, 신고자, 행위자, 상담원 등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.
 - ⑧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6조(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) ①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,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.
 - ②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- 제17조(사건의 종결) ①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징계·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.
 - ②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고 인사담당부서와 함께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 보호) ①공사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.
 - ②공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.
 - ③공사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,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.
 - ④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장계) ①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 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「상벌세칙」에 따라 징계와 관련하여 심의하고, 사장이 최종 확정한다.
 - ②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,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- 제20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공사는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 - ②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|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|
| 접수 | 접수 일자 | 신청인 | | つえ,11 0 | 취기가기 | 최 제 이 기 | 확인 | | | |
| | | 성명 | 소속부서 | 고충내용 | 처리결과 | 회신일자 | 담당 (상담원)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
| | 직장 내 | 괴롭힘 | 조사 신청시 | H | 해당사항에 v 표시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접 수 일 | 20 . | | 상담원 | | (서명) | |
| | | 성 명 | | 소 속 | | |
| 당 사 자 | 신청인 | 연락처 | (휴대전화) | | | |
| 0 1 1 1 | - 기기 - 1 시 | | (e-mail) | | | |
| | 피신청인 (행위자) | 성 명 | | 소 속 | | |
| 상담/조사 신청 내용 | 기록합니다. | | | | 은 증인의 유무 등을 | |
| 요구사항 | 1. 직장 내 괴톱 3. 징계 등 인 | | () 2. 재빌) 4. 기티 | 남방지 조치 나 () | () | |
| 9 | | 상 내 괴롭 [©] 년 인 | 힘 사건의 조사들 월 일 (서명 또는 인 | |]다. | |

서 약 서

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소 속:

직 급:

성 명: (서명)